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변 호	
------------	--

제안연월일 : 2025.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5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180	김미애의원 등 10인	'24. 8. 26.	'24. 11. 14.
	8683	안상훈의원 등 10인	'25. 3. 6.	'25. 8. 18.
	9853	강선우의원 등 16인	'25. 4. 15.	'25. 8. 18.
	10345	최보운의원 등 11인	'25. 5. 2.	'25. 8. 18.
	11191	서영석의원 등 11인	'25. 7. 1.	'25. 8. 18.

나.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8. 1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27.)는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27.) 비용추계 생략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참고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

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아동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외에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아동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안 제22조의4제1항 후단).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학대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

차보고서의 내용별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22조의4,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는”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는”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것’을 “것.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보호조치가 있던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입원 등 의료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한 행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이 행사되는 동안에 그 범위에서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제한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 행사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

한 지원 사항

제2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3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장,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장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제65조의2제4항 중 “작성 절차 및 방법”을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으로, “대통령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권리 보장원은 이 법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6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9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

보장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⑥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u>아동권리보장원</u> 의 설립 및 운영)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u>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u>아동권리보장원</u> (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의2(<u>국가아동권리보장원</u> 의 설립 및 운영) ① <u>국가는</u> ----- ----- ----- ----- ----- ----- <u>국가아동권리보장원</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보건복지부장관은</u> 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u>비용을</u> 지원할 수 있다.	⑤ <u>국가는</u> ----- ----- <u>경비를</u> <u>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u>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보호조치) ① ----- ----- ----- ----- ----- ----- ----- ----- ----- ----- ----. <u>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u>

	<u>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u> <u>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u> <u>의심되는 경우 「장애인복지</u> <u>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u> <u>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u> <u>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u> <u>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u> <u>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u> <u>“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u> <u>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u> <u>수 있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 키는 것	4. ----- ----- ----것.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시킬 수 있다.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⑥ ----- ----- ----- -----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 (생 략)

<신 설>

<신 설>

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
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자(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보호조치가

있던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입원 등 의료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한 행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이 행사되는 동안에 그 범위에서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 행사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

제22조의4(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 ⑥ (생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

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

-----: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

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

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사자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아동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 .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
 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
 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
 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
 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장, 같은 조 제
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

<신 설> 7. (생 략) ④·⑤ (생 략)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 ③ (생 략)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u>작성 절차 및 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u>설의 장,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u>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u>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u>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u>-----<u>보건복지부령</u>-----.
---	--